

2008. 11. 18 .

**수 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의안발의 서명서 1부.

2.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유영화 의원 (서명또는 날인) *S, m, J*  
외 6 인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안발의서명서

| 의원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
|------|-------------|----|
| 이수화  | 2018. 3. 27 |    |
| 김명섭  |             |    |
| 김병홍  |             |    |
| 김병장  |             |    |
| 최종필  |             |    |
| 최경중  |             |    |
| 이봉우  |             |    |
|      |             |    |
|      |             |    |
|      |             |    |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번호 | 1306 |
|------|------|

발의연월일 : 2008. 11. 10.  
발의자 : 유영화의원외 6인

## 1. 제안이유

공동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서민의 안정적 생활에 다소 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에 한 한다)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7호)

## 3. 개정안 : 별 입

##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입

## 5. 관계법령 : 별 입

- 주택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6호]

## 6. 기타 참고사항

- 타시군 지원사례 : 별임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에 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개정전  | 개정후  |
|--|--|
| <p>제4조(지원대상)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6. (생략)<br/><u>(신설)</u></p> <p>7. (생략)</p> | <p>제4조(지원대상) -----<br/>-----<br/>-----<br/>-----<br/>-----<br/>-----.<br/>1.-6. (현행과 같음)<br/>7. <u>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u><br/><u>(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u><br/><u>분에 한한다)</u><br/>8. (현행 제7호와 같음)</p> |

## 주택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46호]

-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타시군 지원사례

### □ 청주시

- 지원근거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2006. 9. 29 제정]
-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에 한한다)

### □ 충주시

- 지원근거 :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2008. 5. 20 제정]

- 지원내용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전기료
2.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3.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4. 단지내 산업용 전기료

### □ 음성군

- 지원근거 :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2007. 4. 2 제정]
-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에 한한다)

### □ 성남시 · 광명시

- 지원근거 : 주택조례[성남시 2007. 4. 2 / 광명시 2008. 3. 26]
- 지원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